

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)	전화번호	
	소재지		

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정관 또는 규정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1부 4. 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3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 사	→	지 정	→	게 시
신청인		처리기관: 해양수산부						